

주 문

1. 피고 [] []은 공동하여 원고 []에게 10,000,000원, 원고 [] []에게 각 1,00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. 1. 23.부터 2025. 7. 17.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들의 피고 []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[] []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, 원고들과 피고 []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